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공무원인 신청인이 임야 개발 및 폐기물처리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대전조정2·3 정정·손배청구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시티저널 (대전시티저널)
중 재 부	대전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05.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추후보도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임야 개발 허가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며 경찰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정정보도 및 5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해당 사안은 추후 보도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자 신청인이 심리 중 청구명을 추후보도로 변경하였으며, 중재부는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시티저널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토지 개발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기자와 공무원, 업자 등의 범행 행각이 경찰에서 모두 밝혀졌다.

대전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는 8일 대전 동구의 한 임야 개발 허가와 폐기물 처리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가를 내주겠다고,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업자로부터 받은 인터넷 언론 기자 육모(55) 씨를 제3자 뇌물 교부와 변호사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자에게 이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대전 ○구청 공무원 송모(56)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모 건설 대표 주모(48) 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모(44·여) 씨를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모 기자는 업자 주모 씨에게 친구인 공무원 송모 씨를 통해 허가를 내주겠다고, 2012년 7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고, 이어 송 씨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송 씨는 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씨는 송 씨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업자 주 씨는 기자에게 공무원 송모 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육모 기자는 생활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있지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무원 송 씨 역시 기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구청 공무원 송모 씨는 6·4 지방 선거 기간 이와 관련된 기사를 최초로 게재한 <시티저널>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원의 손해 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 사회면에 “주고 받고 배달사고 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공무원 송 씨는 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와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주)대전시티저널은 이 결정이 확정 된 후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하단에 [별지]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 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 다음날로부터 이행이 이루어

지는 날까지 1일당 50만원의 금액을 지급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 한 경우 신청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하여 피신청인측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01. 23.

〈별 지〉

- 가. 제목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전 동구의 한 임야 개발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대전 ○구청 공무원 송모 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모 씨는 이 건과 관련 2014년 10월 27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대전시티저널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 내 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2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주거나 절반만 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695·696, 2015서울조정697·698(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2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KBS 등 지상파가 외주제작사에게 10년 전과 똑같은 제작비를 주거나 드라마의 경우 제작비를 절반만 주면서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고 있으며, 방송윤리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외주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도 모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외주사 관리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KBS는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다 외주제작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며,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므로 방송사와 외주사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과태료 문제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KBS가 외주사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14년부터는 외주사의 수익 배분율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외주사 지원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 측의 입장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된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를 수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조선일보 -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헐값에 외주社 저작권 獨食』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면, 조선닷컴 1월 12일자 사회면)

■ 내 용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외주(外注) 제작사에 맡기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10년 전 수준에서 거의 올려주지 않는가 하면,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의 경우 최근 5년간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93.7%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의 60%가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73%가량은 “아무런 법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주 제작사들은 ‘지상파에 잘못 보였다가 밥줄 끊길까 봐’ 일절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지상파의 ‘갑(甲)질’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지상파가 경영 부실을 개선하지 않고 외주 제작사만 쥐어짜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조정대상보도 2

- 조선일보 -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외주社가 받은 협찬금 떼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1월 12일자 TV·방송면)

■ 내 용

“지상파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정을 토로해도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지상파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교양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찍는 외주 제작사 대표 이모(46) PD는 “지상파용 다큐를 찍을 때마다 빚만 늘다”고 말했다. 2005년 지상파 다큐멘터리 편당 제작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이 씨는 지난해에도 KBS와 MBC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았다. 인건비, 식비, 차량 대여비 등 제작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다. 이 PD는 “방송 시장이 한계에 달하자 방송국이 군소 제작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드라마 외주사 본부장 역시 “미니시리즈 편당 제작비가 3억~4억원으로 올랐지만, 방송국에선 1억5000만~2억원만

준다. 나머지는 제작사가 온갖 협찬으로 때워야 하니 드라마가 PPL(간접광고)로 도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제작비는 절반만, 저작권은 독식

보통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거나 방송사와 공동 보유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외주사 대부분은 지상파에 저작권을 넘긴다. KBS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사에 비해 경영이 투명하고 해외 방송국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도 더 크기 때문에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고 있어야 해외 수출도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KBS는 2009년부터 5년간 외주사가 만든 1561편의 프로그램 중 1464편(93.7%)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 외주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긴 경우는 2편에 그쳤다. 한국독립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영화 틀어주는 극장이 저작권을 모두 갖겠다고 하면 납득하는 제작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나마 드라마는 수출 등 부가 판매로 생기는 이익을 외주 제작사와 5대5로 공유하는 관행이 있지만, 교양 분야는 그조차 없다. 저작권법 전문 권○○ 변호사는 “방송사가 돈을 댔더라도 외주사가 실제 제작을 맡았다면 공동 제작인 만큼 저작권도 공동 소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주사가 직접 기업의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지상파는 협찬금 일부를 떼가거나, 외주사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해외에 드라마를 판매해도 지상파 자회사에 15%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촬영 지원, 해외 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부담은 모두 외주사가 진다. 심지어 방송 내용 탓에 심의에 걸리면 과태료를 외주사가 내게 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협회 박○○ 사무국장은 “지상파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힘없는 제작사만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 “갑에 항의? 밥줄 잘릴 일 있나”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573개 외주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44개 업체(60%)가 “지상파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 제작사는 17개 업체(5%)에 그쳤다. 대부분 업체(73.3%)는 갑(지상파)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계약서가 없어 대응 자체를 못한 경우도 13.3%에 달했다. 2013년 참여연대가 48개 외주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38개 업체가 “방송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항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노○○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각 창작자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방송 시장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 시청률엔 목매면서 외주 제작사 관리 소홀

작년 5월, 30년 전통의 엑스트라 인력업체 ‘○○○○’이 도산했다. KBS ‘○○○○’의 출연료 미지급이 결정타가 됐다. 이 업체는 외주 제작사 ○○○○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끝내 받지 못했다. KBS는 “외주 제작사에 출연료를 지급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고만 했다. 관계자들은 “KBS가 외주 제작사 선정 주체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각 방송사의 외주 제작 편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외주 제작사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검증 노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상파 PD는 “톱스타나 스타 작가만 섭외되면 업체의 경력이나 재정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단 일을 맡기는 지상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노조 ○○○ 위원장은 “지상파가 외주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계속 이런 현실을 외면하면 결국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부터 말라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10면 상단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지상파, 혈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2일 1면 및 10면에 <지상파, 혈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지상파,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 떼 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라는 제목으로 KBS 등 지상파가 외주제작사에게 10년 전과 똑같은 제작비를 주거나 드라마의 경우 제작비를 절반만 주면서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방송윤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외주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을 하면서도 ‘갑격시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외주사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2005년 제작비가 2,6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경우 10년 전 외주제작비 지급액은 약 1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억원 이상이며, 모든 외주제작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2013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BS는 교양·다큐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외주사가 기획, 제작한 완제품을 방송사가 구매하는 형태가 많고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공유하기도 하나, KBS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관여하고 직접제작비에 간접제작비·일반관리비·이윤까지 더해 외주제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고, 반면 저작권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와 외주사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공유하며, 방송권으로 구매하는 드라마는 주된 저작권을 외주사가 갖고 있고, 과태료는 귀책사유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대부분이 협찬과 간접광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외주사가 과태료를 부담하였던 것이며, 외주제작계약은 도급이므로 방송사가 외주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KBS는 제작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제작비 조달계획을 받거나 건전한 제작사와의 공동제작을 유도하는 등 미지급 사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외주사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2014년부터는 교양·다큐의 경우에도 방송권·포맷권 해외 판매 수익 및 영화화권 국내외 판매수익의 50~60% 배분, 촬영원본을 활용한 신규 저작물 작성권 부여 등 혁신적인 외주사 지원책을 도입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 1월 12일자 A1면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제하 기사 등과 관련,

KBS는 평균 제작비를 10년 전보다 많게는 2배까지 올려 지급하였고, 외주제작 계약 시 서면계약을 해왔으며, 2013년 10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2월 9일까지 조선일보 종합면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합의사항 이행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동안 조선닷컴 홈페이지 연예/TV·방송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2.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7일자 A8면, 조선닷컴 2월 4일자 연예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5서울조정1476·1477, 2015서울조정1478·1479(병합) 각 정정·손배 청구
신 청 인	조○○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SBS 콘텐츠허브)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30.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소위 ‘땅콩회항’ 사건 관련 당사자인 대한항공 여 승무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나타난 것은 회사의 회유 및 교수직 제안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와 교수직 제안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며,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및 SNS, 블로그 등에 개인 신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지탄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로 신청인이 회사의 회유와 교수직 제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신청인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를 받거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보도에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0일자 23시, SBS콘텐츠허브 1월 10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 ▷ 진행자 : 지난달 12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로 용서를 구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 그런데
- ▷ (압수한 USB녹취파일 중) 남성 :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할지 모르겠네, 신문기사가 다 나갔는데 뭘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는데
- ▷ 진행자 :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을까?
- ▷ (통화녹취파일) 남성 : 대신에 이번 일이 잘 수습이 되고 하면 내가 잊지 않을게
- ▷ 진행자 : 사건 발생 10일 째 되던 날,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 여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 ▷ 기자 : 대한항공 맞으세요?
- ▷ 기자 : 어떤 조사 때문에 오셨나요?
- ▷ 진행자 : 기자들의 질문공세에도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묘합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승무원은 취재진을 피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실은 승용차 안에 있는 일행들. 그들은 다름 아닌 대한항공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사건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결수 신분으로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그녀의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향후 그녀의 거취는 사건을 목격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진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일만 잘 수습이 되면 잊지 않겠다며 거짓진술을 지시하는 이 USB 속의 남자의 말이 예상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승무원들과 같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로 회사오너의 범법행위를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

리가 입수한 이 USB 안에는 앞서보신 남자들의 수상한 대화 외에 또 다른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놀랍게도 대한항공 사건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국토교통부 조사실 안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 ▶ 대한항공 관계자 :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거나 욕설한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 ▶ 진행자 : 대한항공 측은 당시에서 기내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전원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녹취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좀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해당 승무원이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 ▶ 진행자 :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답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박○○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욕설 없었어요? 고함 없었어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없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비행기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네
- ▶ 진행자 : 지금은 언론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말하고 있는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에는 조 전 부사장의 욕설이나 고함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것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건발생 20일째 되던 날, 우리는 박○○ 사무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 ▶ 기자 : 국토부 조사받을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셨는데 진실이 뭐니까?
- ▶ 진행자 : 한참 동안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 ▶ 박○○ :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고 나가서 너는 답변을 하면 된다. 다수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할 만한 힘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짠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면 뒷일은 자신들이 무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 진행자 :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들의 경우는 어떨까.

- ▶ 박○○ : 지금 명품가방 들고 저 웃고 있는 여승무원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승무원이에요. 여승무원들이다...
- ▶ 진행자 :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그런 파일로 맞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회사에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끝나고 나면 모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에 교수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 당시 현장에 목격했던 여승무원들 모두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 서비스의 장본인인 여승무원에게는 회사 측이 대학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했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또한 이런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SBS콘텐츠허브(<http://www.sbs.co.kr>)의 홈페이지 교양 섹션 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참고인 승무원 모자이크 관련 영상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땅콩회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러 간 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아 묘한 웃음을 지으며 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참고인 자격으로 12월 15일 검찰조사 받은 승무원의 자료 영상은 박○○ 사무장의 주장과 SBS 프로그램의 방송 의도와는 달리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회유를 받은 바 없는 동시에 검찰에 거짓 진술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 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끝 부분에 진행자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영상을 방영한다.
 - 나. SBS(<http://www.sbs.co.kr/>)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해당 다시보기 서비스 뒷 부분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03. 02.

<별 지>

- 가. 제목 :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 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에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묘한 웃음을 지으며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러 간 여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참고인 자격으로 12월 15일 검찰조사를 받은 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4

모 골프업체가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2197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인터넷 스포츠서울)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5. 02. 10.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기사수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스크린골프 업체가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골프 박람회인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인은 2015년 박람회를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연속 해서 미국 골프박람회에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음에도 경쟁업체만이 골프박람회에 참여한 국내업체인 것처럼 잘못 보도돼 스크린골프 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 업체도 2015년 미국 골프박람회에 참여했다는 수준에서 기사 수정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 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서울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스포츠면)
- 내 용
토털골프문화기업 (주)○○○(대표이사 김○○)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2015

PGA 머천다이즈 쇼(PGA MERCHANDISE SHOW)에서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 사업자인 △△△과 MOU를 21일 저녁(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골프존의 김○○ 회장, ○○○○ CEO와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두 회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사 간의 기술적인 협력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200여개에 이르는 △△△의 수준 높은 골프 레슨 노하우와 골프존의 최첨단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은 더욱 수준 높은 레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 △△△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제휴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은 이번 협력으로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 마케팅본부장 임○○ 상무는 “세계 골프인들의 축제인 2015 PGA 머천다이즈 쇼에서 골프 아카데미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시뮬레이션 골프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골프 한류 ‘K-GOLF’를 실현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PGA 머천다이즈 쇼는 매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드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박람회로 전 세계 유명 골프 업체들이 모두 참가한다. PGA 머천다이즈 쇼에서는 최신 골프 용품들의 정보와 트렌드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이번 PGA 머천다이즈쇼에는 국내 스크린 골프 관련 업체로는 □□□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스포츠서울(<http://www.sportsseoul.com>) 스포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2일자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라는 제목으로 □□□은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 유포이며, 당사는 매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그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기술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은 막대한 금원을 들여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최대 골프 박람회인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대규모로 참가 중으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2015년 1월 22일자 라이프면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 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하단에 ‘이번 머천다이즈 쇼에는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과 ○○○이 참가했다.’를 첨부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3. 2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스포츠서울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5일자 라이프면)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5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 폭발 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담배 상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883·288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코리아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5. 07.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상표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 대상인 저가 중국산 제품과 달리, 신청인 회사 제품은 이중보호 회로장치가 있어 폭발과는 무관한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여과없이 보도해 제품의 안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신청인 회사의 제품은 불량 중국산 저가 상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핑’』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 내 용

- ▶ 진행자 :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불량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려는 순간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 ▶ 기자 :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도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 ▶ 기자 : 국내에서도 지난 1월 경북 경산과 경기 양평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습니다.(신청인 회사 제품 노출)
- ▶ 기자 :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실제 저가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충전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시작 5분 만에 표면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고 3분 뒤엔 평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합니다.
- ▶ 기자 : 실험에 사용된 저가 전자담배 7종은 충전을 시작한지 25분 안에 모두 폭발했습니다. 전자담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돼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호회로가 불량이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 ▶ 기자 :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보호회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조○○ 교수 : 비정상적인 것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회로 안전회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요.
- ▶ 기자 :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실험 조건이 다소 극단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23일 아침&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의 폭발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품에 사용된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 그러나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품은 이중보호회로장치가 있어 전자담배 폭발 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저가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
- 나. 본문 : 지난 4월 23일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평”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코리아의 전자담배 ○○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이중보호 회로장치가 있어 불량 중국산 저가 상품과는 무관해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주식회사 ○○코리아 측에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5월 22일까지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5.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JTBC - NEWS 아침 &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0일자)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6

신청인 방송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의 대표와 보도국장이 착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광주조정81 반론청구
신 청 인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중 재 부	광주중재부
접 수 일	2015. 05.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광주MBC와 모 건설사 사이에 맺은 협찬 협약과 관련해 협찬금 중 일부를 광주MBC사장과 보도국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공무원이 거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타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MBC에서 해고된 전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타언론 보도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취재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돼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사실확인을 위한 피신청인 측의 충분한 취재가 없었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시민의소리 -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1일자 10면)

■ 내 용

광주MBC가 민원 ‘한 방’에 D건설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 민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광주시 공무원이 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D건설은 지난해 8월께 Y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마주하고 있는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내세운 명분은 아파트 주 진입로가 광주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주MBC는 착공 승인권이 있는 광주 남구청에까지 “MBC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D건설은 광주 MBC와 3~4개월가량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12일 후면도로 개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광주MBC와 D건설의 건축 협약 문건(‘○○동 ○○○○ 건축 협약’)에 따르면 광주MBC가 D건설과 지난해 11월에 협약한 조항들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방송선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건립동들의 옥탑층 고도 조정과 별도의 후면도로 개설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쓰여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문건에 “D건설은 광주MBC에 광고·협찬금으로 2억원(부가세 별도)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이다. 협찬금 1억원은 2014년 1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올해 11월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광주MBC가 노골적으로 착공을 방해하자 건설사 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찬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광주MBC는 해당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최초 건축심의를 이루어질 때에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광주MBC는 S건설(이후 Y건설에서 D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감)이 2012년 말께 건축 심의를 받을 당시 남구청이 광주MBC와 한 건축심의 협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해 1월 회신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다.

이와 함께 S건설로부터 2013년 5월께 소유권을 넘겨받은 Y건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바로 그해 8월 D건설로 소유권을 넘긴 이유도 광주MBC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Y 건설에 대한 검찰 조사는 6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이○○ 광주MBC ○○국장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록 5층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면 중계차 통행 문제나 방송 송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인근에 건물이 건립될 때도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이러한 조건을) 합의하고 상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협찬금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도 (입주자를 위해) 광고가 필요했을 것이고, 처음에 건설사 측에서 광고·협찬금 3억원 얘기가 나왔으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 출입로가 회사 앞으로 뚫리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더 큰 문제는 광주MBC가 받은 협찬금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전직 광주MBC ○○국장이었던 송모 씨는 올해 초 “최○○ 광주MBC 사장과 이○○ ○○국장이 D건설에 착공의 대가로 처음 10억원을 요구했다가 8억원으로 낮췄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결국 5억원으로 합의한 후 2억원은 방송사 협찬으로, 나머지(약 3억원)는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을 속이고 들어서 착복했다”며 최 사장과 이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록 몇 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송 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의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송 씨는 광주MBC와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D건설 직원 A 씨의 아버지 B 씨와 모 대학 관계자 C 씨와 이 문제를 놓고 통화를 했다.

두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광주MBC 측이 맨 처음 10억을 요구하고 나중에 5억원으로 D건설과 합의를 봤다는 정황이다. 이에 따르면 3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송 씨가 최 사장과 이 국장이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B 씨는 여수 고위직 등을 거친 지역 유력 인사로 D건설-광주MBC 협약과 관련해 아들 A 씨의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송 씨에게 “당초 거기서(광주 MBC) 10억을 요구했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D건설)가 제시한 것이 한 3억에서는 많게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B 씨는 “5개(5억원 추정)는 확실한데 2개는 정식으로 협약했고, 3개는 누구를 통해서 건너갔는지 진실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C 씨의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 ○○시청 ○○○○본부 ○○ 담당 S 씨가 MBC와 건설사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검찰이 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씨는 지인인 S 씨에 대해 “(D건설사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S계장이 D건설사 측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 씨와의 녹취록에서도 광주MBC가 “(D건설 측에) 10억을 요구해서 8억, 5억까지 깎았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C 씨는 ‘협약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송 씨의 질문에 “언더테이블(비공식)로 해결이 됐다고 그런다”, “(S계장이 협약 타결과 관련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S 씨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이 말의 진위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관련 송 씨는 “언론의 힘을 이용한 부정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며 “착공계는 광주MBC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구청의 권한인데 20년 기부체납인 광주시 소유 도로의 통행문제를 이유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광주MBC 아래에 아파트가 건립될 때도 협찬금이 들어왔지만, 2~3년에 걸쳐 7천만원 정도였다”며 “이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협찬금은 경영국이나 사업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국장이 협상 TF팀장을 맡은 것을 보면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시민의소리 머릿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각 활자크기와 같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목 :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시민의소리’는 지난 5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송모 씨가 광주MBC 사장과 보도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 내용을 보도하면서 광주MBC와 A건설사 사이에 맺은 협찬 협약과 관련해 광주MBC 사장과 ○○국장이 3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공무원이 거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MBC는 “사장과 ○○국장이 3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고, ‘시민의소리’의 기사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고가 확정된 광주MBC 전 ○○국장 송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내용을 통째로 인용해서 짜깁기한 데다 고발장과 녹취록에 언급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취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주MBC 관계자에게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광주MBC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 시민의소리는 지난 5월 7일자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광주MBC가 모 건설사와 협찬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장과 ○○국장이 협찬금의 일부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송모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주MBC 측은 “모든 협상은 개인이 아닌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송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MBC 측은 “협찬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한 송 씨는 광주MBC 전 간부로 재직하다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고된 자인데 시민의소리는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서특필해 보도하면서도 광주MBC 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광주MBC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강하게 유감을 밝혀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 5. 28.까지 주간신문 시민의소리 10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개인 착복 의혹에다 광주시 공무원이 거간(?))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015. 05.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시민의소리 - 『[반론문]광주MBC,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언론계뉴스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7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든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2971, 2015서울조정297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피	신	청	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0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만평에서 손해사정사를 파리로 비유하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처럼 묘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든 손해사정사들을 파리에 비유하고, 보험사기 및 불법 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만평을 게재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비록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비위를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만평만 놓고 보면 손해사정사 전체를 비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만평은 의견의 일종이므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수준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대한변협신문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제하의 만평 (2015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만평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대한변협신문 제542호 변협신문 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근 리스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의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만평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모든 8,000명 손해사정사를 톱파리로 비유하였으며 더 나아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업법 186조에 근거한 전문 국가자격사로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손해사정사들이 톱파리처럼 비유한 것과 보험사기 및 불법 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만평을 게재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이에 해당 만평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만평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라는 제목으로 손해사정사를 파리로 비유하며, 전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일부 손해사정사가 불법행위 등에 관련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일선에서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6월 29일까지

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3면에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3면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근 리스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 기사의 부제목(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 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의
- (1) ‘뉴스’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 (2) 조정대상기사들이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들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한변협신문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7월 6일자 뉴스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8

신청인 언론사가 모 연예인의 트위터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에 대해 부도덕한 짓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438·3439·344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소셜뉴스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헤럴드 (인터넷 헤럴드경제)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8. 27.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배우가 자신의 SNS에 동료 배우들에 대해 남긴 글을 사전 동의 없이 위키트리에서 기사화하였으며, 모 배우가 이를 문제삼자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는 위키트리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위키트리를 발행하는 신청인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임베드 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본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현행 트위터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게재된 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 언론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과 트위터 이용약관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요구 사항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게재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

■ 내 용

배우 김○○이 동료 배우들에 대해 남긴 글을 위키트리가 기사화하면서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1○○○○○○○○○○)를 통해 최근 영화 촬영 중 만난 이정재, 전지현, 김혜수, 유해진 등 배우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다. 이를 SNS 기반 뉴스 매체인 위키트리는 ‘배우 김○○이 트위터에 풀어놓은 동료배우 썰’이라는 제목으로 곧장 기사화했다.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80만 건 이상, 트위터를 통해 30만 건 이상 노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김○○은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이 공개된 장소이고 일정 정도 공론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촬영장에서 만난 동료배우들의 소소한, 게다가 농담까지 섞여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는 잡담들을 끌어 모아 그것만으로 기사를 내다니”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사후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삭제해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기사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본인이 싫다는데 본인에 대한 기사가 아닌 본인의 글 자체 만으로 쓴 기사를 못 내리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뭘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자 위키트리 측은 ‘포스팅을 임베드할 때는 포스팅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트위터가 제공하는 임베드(Embed,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트윗을 옮겼기에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여러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배우이신지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트위터에 쓴 트윗글을 기사화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내용 자체도 기사화할만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은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남긴 트윗이 온전히 공개된 글이라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 원작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용한 측에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의적인 대응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면 원글이 삭제되면 인용글도 삭제되는 것이 맞지만 김○○이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헤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의 홈페이지 메인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보는 위키트리가 8월 19일자 보도한 「배우 김○○이 트위터에 풀어 놓은 “동료배우 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튿날인 8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에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위키트리가 배우 김○○ 씨에 대해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키트리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트위터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행한 말이나 글은 당연히 뉴스 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본보의 기사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첫째, 본보는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김○○ 씨)가 남긴 트윗은 온전히 공개된 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트위터는 팔로워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특정 계정에 접속하거나 심지어 검색을 이용해서도 누구라도 모든 트윗을 아무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완전히 공개된 공간입니다.
둘째, 본보는 “일각에선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면 원글이 삭제되면 인용글도 삭제되는 것이 맞지만 김○○이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보도해, 마치 위키트리가 임베드 기능을 쓰지 않았으면서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작성했더라도 이미 임베드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텍스트(글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트위터의 기능이자 정책입니다.

셋째, 본보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고 보도했으나,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김○○ 씨의 주장에 기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위키트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는 바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헤럴드경제는 지난 8월 19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에서, 배우 김○○이 자신의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 있으므로 위키트리가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위키트리가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임베드 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텍스트(글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위키트리는 원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위키트리에서는 현행 트위터 이용약관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선스(2차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게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11일(금) 18:00까지의 기간 중 24시간동안 헤럴드 경제 인터넷 홈페이지 (<http://biz.heraldcorp.com>) 연예·스포츠(연예)섹션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연예·스포츠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9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제복 사진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536·353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장○○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10.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모 의경의 권총 사망 사건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카드를 넘겨보는 형식의 기사로 전하면서, 숨진 의경의 피 묻은 제복 사진을 함께 사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은 모 경찰서 근무 당시 응급 환자 구조시 지혈에 사용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신청인 제복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카드뉴스 형식의 조정대상기사가 최근 SNS에서 쉽게 매개되고 있어 신청인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미지 교체 등 피신청인 측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 외에 정정보도 및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유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유감표명을 포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닷컴 -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카드뉴스)

■ 내 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닷컴(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카드뉴스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경찰 총기 사고의 피 묻은 제복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임이 밝혀졌습니다.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카드뉴스면에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사망한 의경의 제복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 묻은 제복 사진은 충남 ○○서에 근무하는 장○○ 경찰관이 근무 중 출혈이 심한 시민을 발견하고 자신의 제복을 벗어 지혈을 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사용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015. 10. 02.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지난 2015년 8월 28일자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애초 사용된 피 묻은 경찰 제복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오후 4시52분께 ○○구 ○○○군경합동검문소 총기 사고로 숨진 박모 상경의 제복 사진이 아니라 충남 ○○

서 소속 장○○ 경찰관이 근무 중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착용했던 제복 사진임이 확인돼 교체했습니다. 편집 과정의 착오로 잘못된 사진을 사용해 장○○ 경찰관님께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www.chosun.com) 홈페이지 사회일반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015년 10월 7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거나 제3항과 같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닷컴 -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0

인천시가 민간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경기조정134 정정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산업	
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사람들)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16.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민간업자의 인천대공원 캠핑장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민간업자에게 인천대공원 캠핑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잘못된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캠핑장의 임대료가 타 캠핑장보다 비싼데다 야영장 내 각종 소란 행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야영장 유상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 신청인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일반 야영장업 등록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대설비 시설비를 별도로 받는 타 캠핑장과 임대료를 단순히 계산해 비싸다는 인상을 주는 등 악의적인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경우 일반 언론이 아닌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 홍보지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신청의 반려사유를 밝히는 수준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이 상세히 게재되지 않은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남동사람들 -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1면)

■ 내 용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 등 일부 언론이 인천대공원 야영장 『○○○○ 캠핑장』의 야영장업 등록신청 반려견에 대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함에 따라 구민여러분께 올바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남동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야영장 등록신청 반려 경위와 이유

인천시는 2013. 9월 인천대공원 야영장을 민간업체에 유상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공원시설이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2015. 4월 민간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코자 남동구에 신청하였으나, 남동구는 인천시가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영리목적으로 유상사용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을 위해 국비 31억여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민간사업자의 영리목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 텐트 등 포함 임대기준

구 분	인천대공원 야영장	부천야인시대 야영장	서울대공원 야영장
사용료(원)	50,000~150,000	33,000	15,000
운영방식	민간업체	시설관리공단 위탁	서울시 직영

또한 야영장 인근에 780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허가는 영리만을 내세운 방만한 운영과 야영장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이어져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 방향 개선

남동구가 인천시에 바라는 것은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대해 2015. 10월에 도래하는 유상사용허가기간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민간 사업자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중단하고, 인천시 또는

인천시로부터 위·수탁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야영장이 공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야영장 등록처분의 반려는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남동구는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이후 처음 발행하는 남동구청 반사회보 <남동사람들>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제목인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가. 제목 :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 민간 사업자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중단하고, 인천시 또는 인천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야영장이 공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야영장업 등록거부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결과, ‘남동구청의 ○○○○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의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산업이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관광진흥법」제4조에 따르면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야영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산업이 등록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등이 등록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은 ○○○○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캠핑장과 타 캠핑장의 사용료 비교 관련

○○○○ 캠핑장과 타 캠핑장의 임대료 비교를 통해 ○○○○ 캠핑장이 타 캠핑장보다 비싸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이는 텐트만 대여하는 타 캠핑장과 임대료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유료임대 장비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 및 야영장 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인한 구민 피해 관련
야영장 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인한 공식 접수된 민원은 2건에 불과하며, 야영장 인근 7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거리는 100여 미터가 아닌 250미터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 처음 발행하는 남동구청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1면에 [별지]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제목인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침착하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9. 24.

<별 지>

- 가. 제목 : “남동구청의 야영장 등록신청 반려사유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나. 본문 : 남동구청이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등록을 반려한 사유는 1.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인천광역시가 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으로 계획하여 직접 조성한 곳이므로, 청소년야영장으로 인·허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하고, 2.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인천광역시 내지 인천광역시장이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년활동진흥법령 등에 의하여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설치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등이 등록신청의 주체가 되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옳으며, 3.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와 신청인 사이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있는 기간은 2015. 10. 6.까지 대략 4개월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등록을 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4. 신청인이 캠핑객들을 상대로 유료 영리 영업을 하면서 얻는 이익에 비하여 화재위험, 범죄 발생의 우려, 고성방가 등 인천대공원의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저해 등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산업 측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일 남동구청이 ○○○산업에 대하여 한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11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중재5·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YTN)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26.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보도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함께 살기로 해놓고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인질극을 벌였다는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인질극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의자와 사귀는 사이도 아니며, 함께 살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4,4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2015서울조정3605·3606)을 신청했다.
- 이후 조정사건 진행중에 담당 조사관을 매개로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도 문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사회면)
- 내 용
 - ▷ 앵커 : 전남 순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시간 반 만에 무사히 인질이 풀려났고 인질범도 검거됐는데요. 인질범과 피해 학생 어머니 사이에 애정 문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 기자입니다.

- ▶ 기자 :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끌려 나오고 이어 아이도 무사히 현관을 빠져나옵니다.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57살 위모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붙잡아 흥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은 오전 7시쯤. 경찰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설득한 결과 두 시간 반 만에 흥기를 내려놓고 아이를 무사히 풀어 줬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인계돼 심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 ▶ 위모 씨(전남 순천 초등생 인질범) :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같이 살기로 해놓고 자꾸만 잠적하니까... 방 안에서도 (아이를) 감싸고 있었지 아이를 해치려 한 건 아니에요.”
- ▶ 기자 : 인질범 위 씨는 피해 아이의 어머니 44살 김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둘 사이 갈등이 있었고 김 씨가 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최○○(전남 순천경찰서장) : “피의자가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 ▶ 기자 : 인질극에 앞서 위 씨는 새벽까지 김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 씨를 의자에 묶고는 김 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 씨에 대해 인질 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YTN <뉴스만만>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중재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9월 1일 <뉴스만만> 프로그램 등에서 ‘순천아파트 인질극’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모 씨가 김모 씨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잘 만나주지 않자 초등학교생인 김모 씨의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여성 김 씨는 피의자(인질범)와 내연의 관계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며, 또한 3,500만원의 금전거래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4,4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21시에 방송되는 <뉴스만만>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중재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이 제 1항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중재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YTN 2015. 9. 1. <뉴스만만>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제목으로, ‘사귀던 여성이 같이 살기로 해놓고 잘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초등학교 아들을 잡고 일질극을 벌였다는 50대 남성 피의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나.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신청인은, 피의자와 같이 살기로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신청으로 전환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수사당국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여, 설령 그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언론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하의 방송에서 경찰의 브리핑 등을 토대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 등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보도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담당 조사관을 매개로 한 상호간 협의를 통해 보도할 문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바 있고, 담당 조사관이 서로 협의한 보도문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재차 확인하였기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된 문안대로 중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6.

〈별 지〉

1. 제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YTN은 지난 9월 1일 ‘뉴스만만’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등의 리포트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피의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가 아니며 이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레스토랑’으로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0일자)
- 내 용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2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이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3677, 2015서울조정3678(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유○○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2.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24.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흠쇼핑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히말라야 핑크 소금 중 공업용을 가공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식용암염 판매업자인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핑크소금은 위생상 문제가 없다며 잘못된 보도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저하 되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문제가 된 업체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선의의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뉴스로 프로그램 『[꼼꼼한 경제] 값비싼 '히말라야 핑크소금', 실상 알고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1일자)
- 내 용
 - ▷ 앵커 : 한 달 전 꼼꼼한 경제에서는 일부 천일염 생산과정의 위생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수입산 고급 소금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핑크 소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 습니다. 오늘(21일) 꼼꼼한 경제에선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 기자 : 천일염 보도 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가 제작진에게 도착했습니다. 건축이나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되는 핑크소금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15년째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수입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 ▶ 김모 씨(핑크소금 수입업체) : 홈쇼핑에서 고가로 판매되는데 제가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 ▶ 기자 : 핑크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도가 낮은 소금으로 알려지면서 명품 소금으로 주목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까진 홈쇼핑에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핑크소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 ▶ 소비자1 : 굉장히 비싼 거라고...
- ▶ 소비자2 : 각설탕 같아. 예쁘다.
- ▶ 소비자3 : 히말라야 산이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 ▶ 기자 :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이나 소금을 끓인 뒤 재결정시킨 꽃소금과 달리 핑크소금은 파키스탄이나 몽골 등에 있는 이런 소금광산에서 바로 채취합니다. 과거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면서 남아있던 바닷물의 소금이 암석처럼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 암염입니다. 불순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업용과 홈쇼핑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5백 그램씩을 물에 녹여봤습니다. 소금을 녹인 지 6시간이 지났는데요. 붉은색 침전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더 많은 불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가인 파키스탄에선 핑크소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 ▶ 김○○(무역업자) : 소금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런 것을 광산 근처에서 주워서 소금 대신 먹고 있는데 식용으로 권장은 안 하죠.
- ▶ 기자 : 핑크소금은 제가 서 있는 찜질방 벽면이나 바닥재, 장식용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금을 분쇄만 해서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수입·유통업체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 ▶ 핑크소금 수입·유통사 : 그걸 캐서 크기만 조절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만고의 세월에서 만들어진 거라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았어요.
- ▶ 핑크소금 온라인판매사 : (정제 과정 없이 그냥 넘어온다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 엄격한 정제를 거쳤다고 나오던데요?) 어디에...

- ▶ 기자 :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한 결과 공업용에선 오히려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식용에선 그램당 75CFU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암염을 기타 소금의 규격에 맞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과도한 소금 사용을 비판해온 영국 울프슨 예방의학연구소 ○○○ ○○○○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 ▶ ○○○ ○○○○ 교수(퀸메리 대학) : 핑크소금의 핑크색은 명백히 산화철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 소금이 건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도덕적이고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 기자 : 소금 위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 선택의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JTBC(<http://jtbc.joins.com>)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히말라야 핑크소금 충격 위생실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9월 21일 8시 JTBC 뉴스룸 2부 ‘꼼꼼한 경제’프로그램에서 “히말라야 핑크소금 충격 위생실태”라는 제목으로 국내 유통 판매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핑크소금)이 짙질방 등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아무런 정제 과정 없이 분쇄만 해서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핑크소금을 포함한 히말라야 식용암염은 채취지역과 생산과정에서 공업용과 다르고 수입 통관 시에도 식용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 유통될 수 있어 ‘식용 암염’으로 정식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은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핑크소금’ 관련 알림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1일자 <JTBC 뉴스룸> ‘꼼꼼한 경제’ 프로그램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핑크소금의 위생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는 현재 흡쇼핑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중 공업용을 가공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유통하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JTBC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085 및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647)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JTBC - 『‘핑크소금’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 경제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3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 직원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경기조정139·14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여행사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01.
처 리 결 과	취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의 직원이며 현지 여행 중 가이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항의를 해도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도된 사람의 지인으로 신청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것일 뿐 신청인 여행사의 직원이 아니며, 모 여행사의 민원 제기 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 여행사의 로고를 사용해 마치 고객 관리가 엉망인 여행사인 것처럼 보도돼 심각한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로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하자,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3,000,000원 및 정정보도 게재, 해당 기사 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아시아뉴스통신 -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뉴스면)

■ 내 용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인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 A 씨(여)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 일 전망이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65)는 지난 5월, 큰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후원을 하기 위해 동료 5명과 네팔 방문을 계획하고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인 A 씨를 통해 5명 본인 700만원(1인, 1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네팔행을 계획했던 동료 2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취소하게 돼 김 씨는 A 씨에게 2명 본인 280만원을 환불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김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여행사 측에 설명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호소했다.

김 씨는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을 믿고 돈을 입금했는데, 현재는 전화도 안 받는다”며 “답답하기만 하다. ○○○ 여행사 측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행사 관계자는 “A 씨에게 항공권 판매 목적으로 수수료를 준 것은 맞지만 A 씨도 고객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인터넷 상에서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 대행 해주겠다고 총 8명으로부터 1억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반 씨(47·여)가 구속되는 등 항공권 구매 대행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피해자들도 ○○○여행사와 A 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보도 2

- 아시아뉴스통신 -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김 씨 일행은 지난달 ○○투어를 통해 4박5일 광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현지로 떠났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김 씨 일행의 여행은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낭패를 봤다. 현지에서 만난 가이드는 개인적인 일을 본다는 이유로 1시간정도 여행객들을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했다. 늦는다는 연락도 주지 않았다.

가이드가 현지 ○○투어 협력사와 제휴돼 있는 쇼핑·마사지 가게에 가자고 강요했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눈치를 주며, 김 씨 일행의 질문에 통명스럽게 대응했다.

더불어 돌아오는 날 출국 수속조차 해주지 않았다. ‘공항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짐도 꺼내주지 않은 채 알아서 짐을 챙겨 떠나라라는 식으로 응대했다.

불성실한 가이드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났던 김 씨는 가이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투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이었다.

가이드는 “어차피 ○○투어에 말해 봤자, 보상받기 힘들 것이다. 그냥 내가 환불해주겠다”며 “○○투어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가이드 비만 뺀다면 된다. 내가 받았던 비용을 주겠다. 그냥 이렇게 받아라”라고 말했다.

받지 않겠다는 김 씨 일행에게 가이드는 “안 받겠다고요? 그럼 잘 쓰게요”하면서 비아냥댔다. 그렇게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김 씨 일행은 ‘한국에 가서 ○○투어에 불만을 제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투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홍보팀의 대응에 다시 한번 기분이 상했다.

김 씨는 “○○투어 홍보팀에 전화해 따졌더니, 직영이거나 본사 직원이었으면 처벌이나 징계를 줬을텐데, 그 가이드와는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김 씨는 “○○투어라는 브랜드를 믿고서 계약했는데, 가이드 본연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려한 모습에 화가 났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고 격앙했다.

최근 해외 여행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이드 불친절,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택 관광을 강요 등 서비스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업체별로 접수된 민원 건은 ○○투어(32건) ○○○여행사(23건) △△투어(20건) ○○관광(12건) ○○○투어(11건) ○○○여행(7건) △△관광(7건) 기타(20건)

순이다.

이 같은 가이드관련 피해 사례가 많은 경우는 현지 가이드가 대부분 여행사 정직원이 아닌 계약된 가이드업체 직원이나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쇼핑 및 옵션으로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다보니 가이드들은 서비스는 뒷전으로 던져 놓고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투어 홍보팀 관계자는 “가이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가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한편 ○○투어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포상휴가 협찬 비용을 현지 교민 여행사들에게 떠넘겼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조정대상보도 3

- 아시아뉴스통신 -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여행사 구매대행 A 씨로부터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여행사와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여행사 구매대행 피해사례(2015년 9월10일자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제하)를 보도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65)가 “지난 5월, 큰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후원을 하기 위해 동료 5명과 네팔 방문을 계획하고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인 A 씨를 통해 5명 본인 700만원(1인, 1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담겨있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료 2명이 취소하게 돼 김 씨는 “A 씨에게 2명 본인 280만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다”며 “○○○여행사측에 설명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주)○○○여행사 구매대행’ 기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 1) 지난 9월 10일 보도된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주)○○○여행사 구매대행 기사에 A 씨가 마치 (주)○○○여행사 소속직원처럼 보도하고 (주)○○○여행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기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A 씨는 지인인 김 씨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것일 뿐이며 (주)○○○여행사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지난 9월 15일 보도된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 이용에 ‘불만족’ 기사에 본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여행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주)○○○여행사가 관련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주)○○○여행사와 이번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기사를 정정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3) 지난 9월22일 보도된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경찰 수사 나서”에 대한 기사에 피해자 김 씨는 항공권을 구매해 준 A 씨와 발권을 진행해 준 ○○○여행사 팀장을 동시에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 올라간 사진 상의 ○○○여행사 실장도 아니며, ○○○여행사 팀장의 실명을 노출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경찰수사 담당자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지만 김 씨가 A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여행사를 통해 받으려 했던 것이며 A 씨는 문제가 되지만 ○○○여행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행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기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취하 후 보도

- 아시아뉴스통신 -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 뉴스면)

■ 내 용

본 아시아뉴스통신은 2015. 9. 10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제목의 기사에서 김모 씨 등 5명은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는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에게 700만원을 입금하고 네팔 항공권을 구매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2명의 항공권을 취소하고자 14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대행 직원은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여행사 측에도 수차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모 씨 등이 항공권 구매를 의뢰한 지인(A 씨)은 ○○○여행사의 구매대행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김모 씨 등의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고객일 뿐이므로 ○○○여행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9. 15.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목의 기사에서 ○○투어를 이용했던 괌 여행객들이 가이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본사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가이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여행사의 로고를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여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9. 22. “(주)○○○여행사 구매대행... 경찰수사 나서”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장을 게재하면서 여행사 팀장의 실명을 노출시킨 데 대해 유감이며 (주)○○○여행사와 조○○ 팀장과는 무관한 사건이기에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14

공무원인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설치 평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5전북중재1 추후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16.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추후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모 공무원이 모친을 포함해 타인 명의로 비닐하우스 및 관련 시설 설치 명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했으며, 군이 매입한 대량의 농지를 아들 명의로 임대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친의 비닐하우스 보조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비닐하우스 환풍시설 및 무인방제시설 관련 보조금 불법 교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조정(2015전북조정64)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 중재부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로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1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공무원, 억대보조금 편법수령 강력 수사촉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뉴스면)

■ 내 용

고창군 공무원이 모친 등 타인명의로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주민 탄원서나 언론에 공개되며 고창군 농민들은 “순수 농민에 가야할 보조금을 공직자가 편법 수령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면사무소 관련업무 담당으로 재직 중에 고령의 모친 명의로 보조금을 받아 다른 공무원의 묵인과 방조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고창군은 뒤늦게 무려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으나 탄원서 제출 주민은 편법 수령 보조금은 이 보다 엄청날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경의 감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고창군 ○○면 ○○리 김모 씨가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면사무소 공무원 K모 씨가 모친 등 타인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이 뼈곡히 적혀 있다.

이에 고창군은 뒤늦게 공무원 K모 씨의 모친인 유모 씨(70·여)에 지급한 09년 특화품목(수박) 육성 명품화 하우스 지원 사업 명목으로 ‘7,915만원’, 2012년 시설원예(수박) 품질개선사업 환풍 시설 ‘980만원’, 무인방제시설 2,450만원을 합친 ‘3,430만원’ 등 총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올해 10월 23일 통보했다는 것.

이는 ○○면 ○○리 ○○○○ 외 4필지 3천여 평의 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09년 지급된 7,915만원은 아들인 공무원 K모 씨가 ○○면 ○○계에서 해당업무 맡을 당시에 지급돼 충격이고 6백 평의 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같은 토지에 2012년 지급된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 명목의 3,430만원 보조금은 모친인 유모 씨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고창지사는 이 토지를 다시 3km 떨어진 ○○면 ○○리 정모 씨에 임대했는데도 고창군은 전 소유주인 유모 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황당함도 연출됐다.

그러나 탄원인은 “정모 씨가 임차해 오모 씨와 공동 경작한다”는 고창지사의 말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모 씨는 공무원 K모 씨의 대리인일 뿐, 실제 경작자 K모 씨가 오모 씨에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 한 것”며 “이는 표면상 임대자가 정모 씨인데 이미 토지를 고창지사에 매각한 고령의 은퇴농인 유모 씨(모친)에 고창군이 3,4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조치를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강력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09년과 2012년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고창군 ○○○○과 ○○특작담당 L모 계장은 2013년 2월 지역전략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조금 환수조치 등 사태가 악화되자 명예 퇴직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해 의혹이 증폭된다.

아울러 탄원인과 일부 언론은 “공무원 K 씨가 해당 지역 면사무소 등에 근무하며 타인 및 가족 등 차명으로 ○○면 ○○리 일대 30여 필지에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엄청난 나무를 식재하며 다른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공개해 충격이다.

더욱 현직 공무원이 70대에 가까운 모친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 편법수령은 L모 계장만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서류에 결재한 상급공무원 등이 K모 공무원의 모친인 것을 과연 모르고 지급했는지 엄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고창 주민들은 “만약 해당공무원이 모친이나 타인명의로 각종 작물 및 수목을 재배하며 보조금 등을 편법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순수 농민에 돌아가야 할 자금을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고창군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전반적 감사 및 강력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창군은 뒤늦게 역대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갔으나 K모 씨가 이의제기를 하며 법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정모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을 철거토록 통보했다.

중재대상보도 2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보조금 편법수령 공무원, 대량의 토지임대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7일자 뉴스면)

■ 내 용

현직 공무원이 모친 등 타인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이 뒤늦게 총 1억 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 소동을 벌이는 상황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이하 ○○지사) 매입비 축농지를 당시 학생인 해당 공무원 아들 명의로 대량 임대받은 사실도 밝혀져 충격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농지원부를 보유한 큰 아들 및 작은 아들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 ‘○○지사’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 등을 근거로 대량의 토지를 학생에 임대한 배경과 농지원부 발급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창군 ○○면사무소 공무원 K모 씨가 모친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의 탄원서 제출 이후, 고창군은 뒤늦게 K모 씨 모친인 유모 씨(70·여)에 지급한 09년 특화품목 육성 명품화 하우스 지원 사업 명목의 ‘7,915만원’, 2012년 시설원예(수박) 품질

개선사업 환풍 시설 '980만원', 무인방제시설 2,450만원을 합친 '3,430만원' 등 총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다.

'○○지사'도 문제가 불거지자 탄원인이 "정모 씨는 표면상 임차인일 뿐 실제 임차인 K모 공무원이 오모 씨에 재임대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3천여평의 해당토지에 대한 정모 씨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을 철거토록 통보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사'는 이 토지 외에도 정모 씨에 ○○면과 □□면 일대에 무려 13필지 토지를 경영회생이나 장기 임대차, 임대수탁 등의 방법으로 임대를 해줬을 뿐 아니라 K모 공무원의 큰 아들(학생) 명의로는 ○○지사가 매입해 보유한 토지 6필지를 임대해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지사 관계자는 "K모 공무원의 큰 아들 명의로 임대한 6필지에는 벼와 콩을 비롯 일부 다년생 나무를 심었는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임대차 기간 내에 옮길 수 있는 나무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2012년 K모 씨 큰 아들에 6필지의 매입비축 토지를 임대한 것은 큰 아들이 ○○면 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유해 임대했다"고 밝혔으나 상세 취재에 들어가자 "○○사무소에 2012년 K모 공무원과 큰 아들 및 작은 아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임대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다른 지사 관계자나 인근 농민들은 "임차인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할 뿐 아니라 제3자와 농사를 지으면 계약해지 사항으로 농지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나 학생은 농업인이 아니며 농지원부를 만들어주지 않으며 공무원과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을 포함한 3명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창지역 농민들은 또한 "○○지사가 정모 씨에 임대한 대량의 토지도 필지별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도 고교생 등 학생 신분인데 농업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농지원부 발급도 이해가 안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당 K모 공무원이 4년 6개월이나 근무한 ○○면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한 것으로 그 배경에 대한 철저 조사와 함께 이들 토지에 계약대로 작물을 재배하는지와, 나무 식재의 적법성 여부 및 나무 식재로 다른 기관의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농민들의 의혹을 풀어 줘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파문이 확산된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내외일보 홈페이지 지역면(광주/호남) 상단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 목 : ‘고창군 공무원 K모 씨’ 관련 추후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8일 및 12월 27일에 걸쳐 고창군 ○○면 ○○리에 사는 고창군 공무원인 K모 씨(53)가 모친 등 타인명의로 비닐하우스 등 설치 명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지 보도 중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보조금 신청인인 모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모 씨가 해당 필지의 평수를 부풀려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본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외일보 홈페이지 지역면(광주/호남) 상단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10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기자 등 다른 임직원에게 조정대상기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인이 현재 항소심 법원 형사재판 중인 사안(보조금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2015년 3월 12일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다시 위원회의 중국적인 중재를 받도록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가. 위 사건 당사자들은 2015년 3월 12일 2015전북조정5, 6(정정·손배청구) 사건 심리 결과 원 조정대상기사 3건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제외하고 행정, 민사, 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 및 승소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 또는 무혐의 결정(검찰, 일부 무혐의 포함, 확정시) 또는 무죄 판결(법원, 일부 무죄 포함, 확정시)을 받는 경우 피신청인이 해당 승소, 무혐의 결정, 무죄 판결 사실을 보도하기로 하고,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원 조정대상기사 3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의 중국적인 중재를 통해 판단받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기자 등 다른 임직원에 대해 조정대상기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나. 이 사건 신청인은 2015년 4월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바,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2건에 언급된 여러 혐의 중 무혐의 처분이 난 부분에 대해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후보도 청구를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판단

- 가. 위원회에서 보건대, 3월 12일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위원회의 중국적인 중재결정에 따라 해당 무혐의 사실을 주문과 같이 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3월 12일 합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한 재판이 신청인에게 무죄(일부 무죄 포함)로 종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도 다시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 나. 다만, 3월 12일 합의 중 행정, 민사 등 다른 쟁송 절차까지 모두 피신청인이 보도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피신청인이 반론 및 정정보도를 낸 점과 원 조정대상기사 3건을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한 점 및 이번 일부 무혐의 결정에 대해 추후보도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 계류 중인 사안으로서 환풍 시설 및 무인방제시설의 보조금 관련 혐의에 한정함이 적절해 보인다.

3. 결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6.

〈별 지〉

1. 제목 : ‘고창 공무원 보조금 불법 편취’ 추후보도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8일 및 12월 27일에 걸쳐 고창군 ○○면 ○○리에 사는 고창군 공무원인 K모 씨(53)가 고창군 ○○면 ○○리 등 4필지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실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김모 씨의 비닐하우스 농지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추후보도합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공무원 보조금 불법 편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뉴스면)
- 내 용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5

구청 공무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3년 만에 두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4009·401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1 (뉴스1코리아)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5. 11. 23.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해당 공무원은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특별 승진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는 중 특정 증인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는 등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정당하게 이의제기한 것으로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승진 소요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 10개월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서울시 의회 감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욕설을 직접 들은 관계자들도 있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승진 시기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 피신청인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보도하고,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 하단의 댓글 게시판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의 댓글 삭제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 조치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뉴스1코리아 -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내 용

서울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배○○ ○○구 ○○○○국장, 이○○ ○○구 ○○○○○담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행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행감 당일 오후 2시 30분 강남구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과 자산관리공사 양해각서(MOU) 체결, 육군제52사단 장병위문공연 참석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결국 이날 행감장에는 이○○ ○○○○○담당관(5급)만 모습을 드러냈고 김미경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강남구에서 홀로 출석한 이 담당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샷대질을 하면서 “아니 과장을 불러냈으면 얘기를 하고 끝내셔야지”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위원들이 “어디서 소란을 부리냐”고 항의하자 이 담당관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아니냐”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담당관은 위원들과 제지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이XX”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담당관의 난동으로 행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위원들 사이에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 참담하다” “신연희 구청장의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등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은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 공무원이 난동을 부린 행위는 지방의회 역사를 통틀어서 전례가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 “오늘 사태에 대해 구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규정주요 행사를 미룰 수 없어 사전에 불참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질의없이 행감 중단을 선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23일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열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 2

- 뉴스1코리아 - 『‘욕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전국면)

■ 내 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욕설 난동’을 부린 서울 ○○구청 공무원이 신연희 구청장 체제에서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고속 특별승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욕설 난동’을 부린 ○○현 강남구 ○○○○○담당관(50·행정 5급)은 지난 2012년 7급(지방행정주사보)에서 6급(지방행정주사)으로 승진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승진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우수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별승진임용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담당관은 같은 해 7월 2일자로 강남구 감사담당관(○○○○전담TF팀장)으로 발령났다.

이후 이 담당관은 지난 2월 27일부터 ○○구 ○○○○○담당관 직무대리를 맡다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22일자로 또 다시 5급(지방행정사무관)으로 특별승진 해 강남구 ○○○○○담당관으로 임용됐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 데만 평균 6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담당관은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두 계급이나 꺾충 뵈는 것이다.

이 담당관은 ○○마을개발 실무 부서인 ○○과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신 구청장의 총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마을 개발 문제를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처음으로 대립했다.

이 담당관의 초고속 승진을 두고 지역 공무원사회의 눈총은 따갑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아무리 업무능력이 우수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만에 특별승진으로 두 계급이 상승할 수가 있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 담당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가득한 행정 감사장에서 욕설 난동을 일으켰으니 ○○구청에서는 개선장군처럼 대하지 않겠냐”며 “벌써 4급 서기관 승진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강남구 의회는 신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인(○○구 ○○○○담당관 이○○)을 2015. 11. 18.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서는 해당 일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홍○○ 단장에게는 자리배치를 하고 발언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특정 증인으로 출석한 이 담당관에게는 자리배치와 발언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 담당관이 이의를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며, 또한 이 담당관은 7급에서 5급까지 2계급 승진을 함에 있어 3년만이 아닌 10년 10개월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09:00부터 48시간 동안 <뉴스1> 사회 섹션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별지] 기재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각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신청인의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다음(www.daum.net)> 및 <네이버(www.naver.com)>에 게재된 아래 조정대상기사(「육설난동’ 강남구 공무원, 3년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하단에 게시된 네티즌 의견(댓글) 게시판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및 <네이버>에 요청한다.

•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newsview?newsid=20151122070026078>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46860>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4746>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01.

〈별 지〉

가. 제목 : ‘육설난동 ○○구 공무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18일자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및 22일자 「육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 이○○ ○○○○○담당관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에게 육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특별 승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공무원 이 담당관은 2004. 8. 1.자 7급 승진, 2012. 1. 1.자 6급 승진, 2015. 5. 22.자 5급 승진 등 7급에서 5급까지 2계급 승진하는 데 10년 1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자리배치 및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뿐, 시의원들에게 육설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16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접견녀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4101~4106, 2015서울조정4143~4147, 2015서울조정4165, 2015서울조정4172~4173(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로스쿨 외 5인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17.(2015서울조정4101~4106) 2015. 12. 23.(2015서울조정4143~4147) 2015. 12. 24.(2015서울조정4165, 2015서울조정4172~4173)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법률 자문 대신 구치소 접견실에서 단순히 재소자와 시간을 보내는 접견 변호사들로 인해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접견실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접견 변호사 대다수가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근거로 접견 횟수 상위 10위까지 변호사들의 성별 비율 및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등 구치소 재소자 접견과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 접견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도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보도에 신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전혀 없고, 설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신청인들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일보 -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5일자 B3면, 조선닷컴 12월 5일자 카드뉴스면)

■ 내 용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 유래된 속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기·횡령 등 잡범(雜犯)으로 추락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파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는 시대, 그 그늘도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부장판사 출신 정모 씨는 개업 4년 차 변호사다. 2013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그는 피해자를 만나 3억원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냈다. 합의서 덕분에 피의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와 피의자를 찾아가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정 변호사와 피의자는 “3억원을 갚아야 하기는 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증인신문 비용, 출장비, 재판진행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과태료 200만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 새 세 차례 징계를 받게 된 그는 법무부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수일 전 강원도 춘천에선 유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모 종종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은 그는 승소하면 수임료 명목으로 일부 토지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졌고, 땅 매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무장이 한 일로 나는 모르겠다”고 버텼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 인근에선 유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의 비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원에 낸 보석금이나 공탁금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 몰래 이를 챙기는가 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변호사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돈과 미국에 사는 아내 생활비로 썼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리 유형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추행 등 일반 잡범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비위가 접수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징계 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 11월 현재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엔 수입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는 ‘먹튀’ 변호사도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은 변호사는 2008년 3건에 그쳤으나 2010년 8건, 2012년 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건이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칭 ‘접견녀’의 출현이다. 일부 로펌들이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를 뽑아 피의자 접견권을 이용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사들만 채용한다고 한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의뢰인이나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일부 재력가 재소자들은 여러 명을 면 접한 뒤 자신을 전담할 접견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한 젊은 변호사는 로펌 입사 후 한 달간 사무실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접견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수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이들 급여는 대략 월 250만~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접견실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일부 접견 변호사들은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발됐으며, 이런 물건들은 부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법조브로커에게 고용된 이른바 ‘머슴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변호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여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실질적인 로펌 사주 역할을 한다. 검찰·법원에 발 뉘는 브로커가 사건을 가져와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가 브로커의 을(乙)이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은 아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다. 최근 인천지검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입해 480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준 변호사 57명도 적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료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회생이나 등기 사건을 자신들이 수입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월 500만원만 준다면 명의를 빌려줄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탈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1906년 3명으로 출발해 2008년 1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 돌파에 102년 걸렸다. 하지만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16일이었고, 11월 말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된 변호사는 모두 2만406명이었다. 7년 만에 다시 1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데다,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을 넘게 된다.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이지만, 변호사의 보릿고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8년 차 변호사는 “한 해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은 20년 전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이었으나, 요즘은 20건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소 300만원 받던 수입료도 이제 100만원 대로 푹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에 매달 5만원씩 내는 회비를 체납하는 변호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회비 내기도 아까워 아예 휴업 신고를 내는 변호사도 400명이 넘는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지만 막상 동기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의뢰인을 부추겨 억지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 소송이 늘어나고, 변호사 불법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이 모여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불법·탈선을 저지르는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럴수록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Why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접견 변호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5일자 Why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재소자들에게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속칭 ‘접견녀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접견 변호사’ 문제는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가 인용했던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접견횟수 상위 10위까지의 변호사들은 성비도 반반이고,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골고루 섞여 있는 등, 오히려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유의미한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각 기각결정

결정사항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서 법률 자문 대신 구치소 접견실에서 단순히 재소자와 시간을 보내는 접견 변호사들로 인해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접견실 공간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접견 변호사 대다수가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서울구치소 자료에 따르면 접견 횟수 상위 10위까지 변호사들의 성별 비율 및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등 이 사건 보도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접견 변호사 문제는 비단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당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문제의 보도와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 까지 정정보도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언론사에 대해 상당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전혀 없고, 가령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신청인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추후 신청인 대부분이 보도에 언급된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사건 보도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여성 변호사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01. 13.

사례 17

모 지역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대구조정79·8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경북매일)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28.
처 리 결 과	취하 (PR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지역 평생학습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잡담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노래교실 수업에 불만을 품은 수강생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며, 금품 수수 부분도 반강제로 걷은 돈이 아니라 명절 때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각 출하여 모은 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활동을 담은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해 보도하자 신청인이 만족하여 조정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경북매일 -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5면)

■ 내 용

포항시 평생학습원이 주민복지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 노래교실의 강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일부 수강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평생

학습원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평생학습원에 따르면 노년층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어르신 과정’은 만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눠 실시되고 있다.

전 과목 무료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요가, 택견, 라인댄스 등 일반과목의 경우 1인당 2과목까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수강이 가능하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공개강좌는 교육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해 수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강좌에 포함된 노래교실의 한 강사가 지정 교육시간인 2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에 교육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내용도 부실해 일부 수강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는 것. 평소 노래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한 노인은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목 푼다고 10분, 잡담한다고 20분을 허비해 10시 반이 돼서야 수업을 시작하는데, 마치는 시간도 11시 10분 정도에 마친다”며 “정규 시간이 2시간인데 고작 40분 내외의 수업을 들으러 먼 길을 오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강사와 친한 일부 수강생이) 강의실 문 앞에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며 “수강생 대부분이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인데 이들에게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생학습원은 전체 120분 중 강의시간 100분, 휴식시간 20분으로 나뉘어져 강사 재량으로 수업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일반 과목의 경우 고정적인 인원 편성으로 해당 과목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노래교실은 선착순 공개강의로 매일 수강 인원이 달라 수강생들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해당 노래교실은 공개 강의로 140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는 인기과목이다”며 “일부 수강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의 시간은 강사 재량껏 이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북매일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북매일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보도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하고, 조정

대상기사 하단에도 아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 최초 보도 후 48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저장하여 검색되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6일자 5면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노래교실의 운영과 관련, 노래강사가 잡담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 2시간으로 예정된 수업은 실제 40여분 밖에 실시되지 않았으며,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강사와 친한 수강생이)강의실 문 앞에서 반강제적으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수업에 대한 불만은 140여명의 수강생 중 1명에 의해 제기됐을 뿐이며, 수업시간을 잡담으로 보냈다가, 반강제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제공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사유 : PR보도)

조정신청 후 보도문

■ 경북매일 - 『노래로 행복 전하는 최○○ 씨 “인기짱이라 전해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6면)

■ 내 용

14일 오전 10시.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에도 ○○시 평생학습원의 한 강의실에서는 노랫소리로 열기가 가득했다. 흥겨운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은 절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150석이 정원인 강의실에는 계단을 의자 삼아 앉은 어르신까지 200여명이 모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렇듯 어르신들의 인기를 자랑하는 수업은 최○○(46·여) 강사가 맡고 있는 ‘신나는 노래교실’. 노래로 행복과 소통을 나누는 그는 지난 2014년 12월 ○○시로부터 표창패를 받는 등 지역에서는 유명인사다. 최 강사를 직접 만나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노래강사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께 (사)한국가창학회 가요전문지도강사자격증을 획득하면서 부터다. 원래 노래를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십여년 전 친구 따라 노래교실을 구경간 것을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우연찮게 임시교사를 맡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찬 일이라 생각했다. 서른 셋의 나이에 노래교실 수업을 들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딱 십 년 만에 강사로 서게 됐을 때의 감회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 몸도 마음도 외롭다 보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한 어르신이 직접 감사패를 제작해 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어르신은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노년의 삶을 힘들게 지내 오셨던 분이셨는데 우연히 노래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5개월간 빠짐없이 수업을 들으셨다. 이후 노래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냈다고 감사하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 앞으로의 계획은

△멋도 부리고, 마음도 움직이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인 것 같다. 수업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수업을 하고 싶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비롯해 웃음치료, 노인여가 등 관련 공부도 지속하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배워나가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18

신청인이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754 손해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세계닷컴 (세계닷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23.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간선택제 워킹맘들이 고과 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워킹맘 엑스포에서 아이를 업고 구경하고 있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기사가 이후 포털 사이트(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뜨면서 약 2,000개가 넘는 욕설,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인 금액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1,500,000원 및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포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세계닷컴 -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세계일보

동료 눈치...고과 불이익...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기사입력 2015.01.08 오후 7:18

최종수정 2015.01.08 오후 9:19

2,124

가- 가+

걸도는 육아병행 지원책... "기업문화 개선 필요"



'워킹맘 엑스포'에 아이를 업고 온 여성이 채용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slay****

돼지처럼 줄줄이 소세지마냥 애만 퍼지르고 부장시켜달라할
기세네..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2

2

13

azum****

조현아 조현민 정도가 아니면 보통 서민 여자들은 다 저렇게 비
참하고 힘들게 사는거다 ㅠㅠ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0

10

1

winm****

남이 나를 배려해주면 감사한거지, 당연한게 아니지. 지들이 좋
아서 애새끼는 싸질러놓고 힘들다고 남보고 책임지라는게 말
이 되냐? 배려가 의무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나 통하는 말
이지, 당신들 임신과 출산에 눈꼽만치도 참여하지 않은 3자가
져야할 의무는 아니지

2015.01.09 오전 12:49 신고

clou****

워킹하지마세요. 세상은 잘돌아가구요! 자기삶을위한 남들의
희생이 사회적 배려라 생각지마세요 그러면서 남편 늦는다가
정에 소홀하다 할말은 다하시자나요 내말이 틀린가요?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답글 0

7

11

g1135993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렇게 한심한꼬라지로 살까?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리트윗

답글 1

3

27

some****

애아빠는 다 뒤졌어?? 다 흠어미야?? 이러니 아빠들이 부모취급도 못받는거야. 싸질러놓고 나몰라라 일만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6

1

bamb****

전세값이라도 안정시켜주면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보겠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4

0

john****

한나라의 우두머리들이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니 살기가 더 힘들구나. 다들 쥐똥 닭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01.09 오전 12:12 신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한 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세계닷컴의 DB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2. 2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사례 19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803·280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동○○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의 요구에 따른 설정된 상황임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0,000원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대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수준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 및 댓글이 게시된 URL을 알려올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15년 5월 2일자)

■ 내 영



- ▶ 신청인 : 하루에 놀면, 정말 제대로 놀면 20만원 정도 들어, 나는 남자 친구랑 있으면 아끼는 편은 아니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 서로 막쓰니까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는, 기념일이나 뭐 많으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자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연봉도 그렇고.
- ▶ 다른 친구 1인 : 남자 친구가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 ▶ 신청인 : 나 하나도 몰라 그런 거, 남자친구가 얼마를 버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할 즈음이어서. 근데 남자 친구랑 그런 얘기는 했었어. ‘한 달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고’
- ▶ 다른 친구 1인 : 언니한테 물어봤어
- ▶ 신청인 : 어, 결혼을 한다, 가정을 하고 한 달에 얼마쯤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근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한 달에 400~500’ 이랬어.(웃음)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21일 1회 방송에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이 “연봉 5천만원 이상”, “외제차” 등을 언급하는 주제VCR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발언은 출연자들의 가치관과 일절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방송 관련 영상(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언니들의 선택> 2015년 5월 2일자 방송에서 프로그램 시작 후 15분 이내에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스크롤 자막으로 표시하되,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보도한다. 또한 해당 일자 프로그램 중영 5분 안에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통상적인 자막 활자 크기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들이 삭제를 원하는 URL을 제시할 경우 즉각 게시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신청인들 관련 URL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삭제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일자)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0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06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주차한 차량이 저절로 도랑으로 빠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김여사’ 등으로 조롱한 댓글이 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방송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사가 있음을 확인,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SBS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7일자)

■ 내 용

- ▶ 진행자 : 한 식당 앞에서 만난 제보자, 주차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 ▶ 제보자 : 황당한 사고가 생겨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 ▶ 진행자 :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주차장에 차를 댄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 서서히 후진을 하죠. 분명히 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불안한데요.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멈출 줄 모르는데요. 아... 저 밑에는 더 이상 안되는데요. 아...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차가 떨어진 곳은 도랑이였는데요. 어이구... 한눈에 봐도 도랑이 깊어 보이네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례 21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브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65 손배청구
신	청	인 신○○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목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리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3,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로 인하여 확대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채널 A 종합뉴스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브 방문... 상인들 “쇼하냐” 항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외 2건

■ 내 용

- ▶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의 심야 브리핑으로 동선이 공개된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의사가 식사를 했던 건물이죠. 박 시장은 당초 이 의사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다 긴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기자 :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30대 남성 의사가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가든파이버. 지난 4일 밤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손님이 크게 줄어든 자 박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박 시장의 브리핑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박 시장에게 힘내라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거세게 항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 ▶ 가든파이버 상인 : “시장님이 경솔한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다고 고객들이 여기 다시 오겠어요.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문 도중 박 시장의 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공개한 박 시장의 일정에는 35번 환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급히 계획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소란 끝에 박 시장은 해당 식당에 3분 정도 들러 업주와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 ▶ 박원순 서울시장 :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아무튼 뭐 장사 잘 하시구요. 잘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아휴 얘기가 다 끝난건가요.”

- ▶ 기자 : 박 시장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가 최대 고비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7월 3일(금)까지 9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다른 인터넷 게시공간(유튜브 및 풀빵닷컴 등)에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동영상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은 2015년 7월 3일(금)까지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공간 관리자에게 위 동영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900,000원 지급

사례 22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587~3590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2.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3.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다음)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등)

사건개요

- 피신청인 방송사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하고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고, 포털들은 해당 기사를 제공받아 업로드함과 동시에 검색화면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정지화면으로 게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 후 보도하였거나 포털의 검색결과에 본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노출시켜 자신이 해당 사건의 가족으로 오인받는 등 심적인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언론사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조정대상보도에 나온 아파트 외 관과 신청인의 가방·옷차림을 본 아파트 주민이라면 신청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금 700,000원 및 포털의 검색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MBN - 뉴스8 프로그램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써”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4일자, 인터넷 MBN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앵커 :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는 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모 씨는 5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청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욕조에 미리 물을 채워 놓았던 황 씨는 아들을 욕조에 앉힌 채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 살해했습니다.



▷(인터뷰) 이웃 주민 :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저희 남편한테 아저씨 담배 있냐고 항상 물어보고...”

▷기자 : 황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숨진 아들의 옷을 갈아입힌 뒤 방바닥에 눕혀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두 시간 뒤, 집에 돌아온 딸은 동생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전화로 아빠에게 알렸고 집에 돌아온 황 씨의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경기 남양주경찰서 ○○과장 :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를 덜 좋아하는 것을 계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기자 :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잠을 자다 숨졌다고 말했지만 수사가 계속되자 욕조에서 혼자 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황 씨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김○○입니다.

조정대상보도 2

- 네이버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NAVER 뉴스
인쇄하기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기사입력 2015-09-14 20:22



NAVER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

검색

[통합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어학사전](#)
[뉴스](#)
[더보기](#)

[설정](#)
[보기방식](#)
[유형](#)
[기간](#)
[재정시간](#)
[출처](#)
[출판유지](#)
[저작권](#)
[상세검색](#)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에 대한 검색결과 중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가 정확하게 일치한 상세검색 결과입니다. 일반검색 결과보기

동영상 1-1 / 1건



1:56초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2월 2일 | 네이버 뉴스

조정대상보도 3

- 다음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입력 2015.09.14. 19:52 | 수정 2015.09.14. 20:42

댓글 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 모 씨는 5

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정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상세검색

통합검색

이미지

동영상

뉴스

블로그

카페

트위터

웹문서

동영상 **전체** 최신



▶ 더보기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5

출처: MBC뉴스 | 사이트 내 검색



▶ 더보기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4

출처: MBC뉴스 | 사이트 내 검색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보도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신청인에게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7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MBN 홈페이지(www.mbn.co.kr)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노출된 장면을 DB에서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을 전달받아, 피신청인 (주)매일방송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서 해당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장면이 네이버 및 다음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향후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 대해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손해배상금 700,000원 지급

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



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

사례 23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부산조정26, 27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케이엔엔 (KNN) 2.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엔 (iKNN)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5. 03. 31.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삭제)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음성변조 없이 방영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승부조작 의혹을 제보한 자신을 항의 고객이라 표현하면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 측이 심리 전 기사를 삭제하고 신청인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KNN - 뉴스아이 프로그램 『유력 우승마의 부진, 승부조작 논란으로』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iKNN 3월 30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기사 삭제)

사례 24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237, 2238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2.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5. 02. 13.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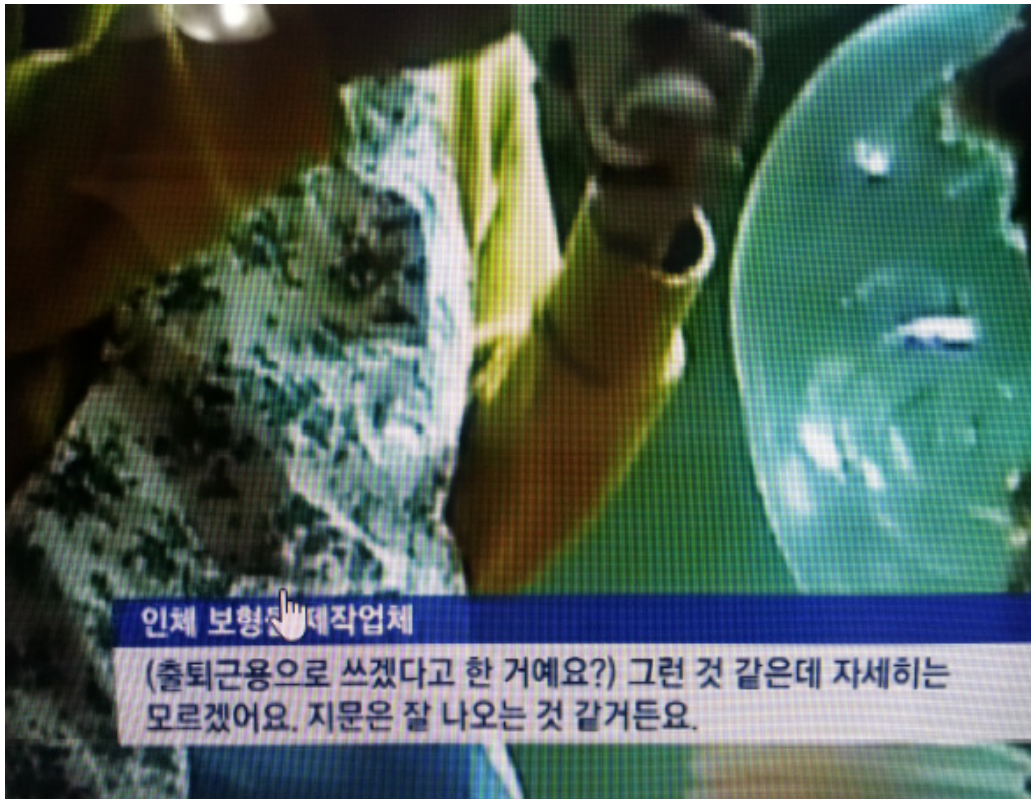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제작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이 했던 말의 순서를 임의로 바꿔 편집하였고, 불완전한 음성 변조로 인해 신청인이 누군지 주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처리했어야 하며 피신청인은 음성이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저녁 9시뉴스, 오전 8시뉴스 프로그램 『제조에 25만원 ‘가짜 실리콘 손가락’ 직접 만들어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 및 12일,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저녁 9시뉴스>, 2월 12일 <오전 8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 내 용

- ▶ 앵커 :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실리콘 손가락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문인식기에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 기자 : 의료용 인체 보형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문 복제가 가능하냐고 묻자 여러 번 해봤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 ▶ 인체 보형물 제작업체 : (출퇴근용으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문은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 기자 : 가짜 손가락 제작에 드는 돈은 25만원. 실제 사람이 등록한 지문을 가짜 손가락이 대체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 지문인식기에 등록된 저희 취재진의 손가락입니다.

[지문을 입력하여주십시오. 인증되었습니다.]

▷ 기자 : 굳게 닫혔던 문이 간단히 열립니다.

물론 지문인식기 중에 실리콘을 아예 못 읽는 것도 있습니다.

18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가격도 성능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30만원대 이하 중저가 제품입니다.

▷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 (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떤 걸 사가요?) 보통 30만~40만원대에서 선택하는데... 오인식이 가능합니다.

▷ 기자 : 실리콘도요?

▷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 네

▷ 기자 : ‘가짜 손가락’을 쓰는 공무원 수는 은밀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략)

▷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의 이기심에 세금은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5년 4월 1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은 2015년 4월 1일 10:00부터 인터넷 JTBC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 내용 중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삭제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3. 2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25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463, 3464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08. 28.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등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제작진이 촬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후속 촬영이 1~2분 간 계속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소형 카메라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방송에 나갈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방송사의 사전 예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에 알리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지인들에게 근무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고 있다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2015년 8월 25일자, KBS 미디어 8월 25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KBS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및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해당 화면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9. 0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26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574·2575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5. 03.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학가 주변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학가의 몇몇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한 곳도 없다는 해당 보도의 멘트 전후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제작진의 단순 실수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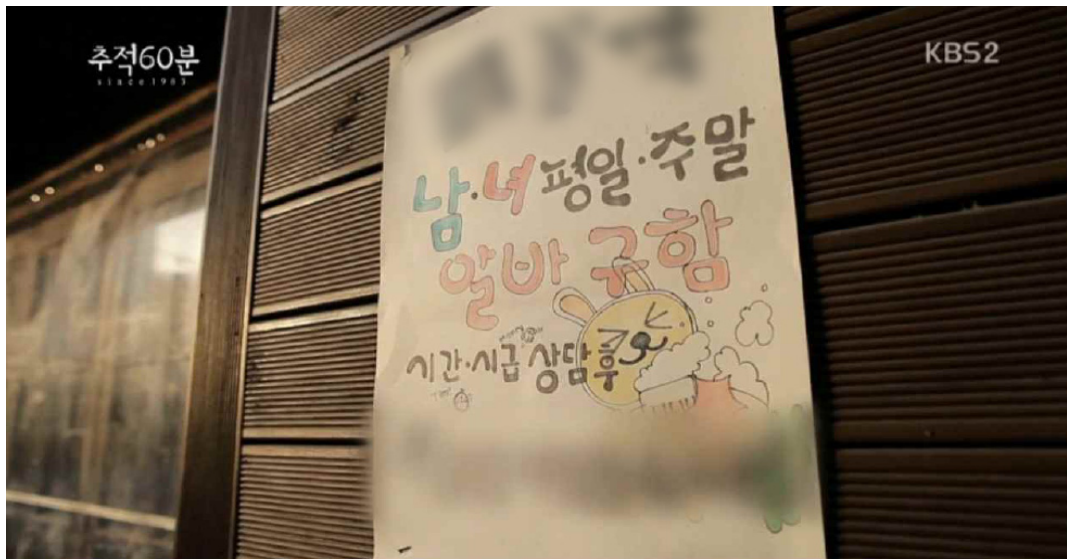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당신의 열정을 헐값에 샵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 내 용

▷ 진행자

2015년 올해 법정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이 최저시급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시급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대학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주변 곳곳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 진행자

최저시급 5,580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3곳에 임금 문의하고 시급이 5,000원이라고 답변하는 장면)

▷ 진행자

최저시급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4.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 까지 위 1항의 금액을 연 2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사례 27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경남조정17, 18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미디어), 3.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4. (주)조선방송 (TV조선, 인터넷 TV조선), 5. 주식회사 케이엔엔 (KNN, iKNN)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부산중재부, 경남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03.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 04. 23. (2015경남조정17,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 :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MBN, 인터넷 MBN :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하 (KBS-1TV, KBS 미디어)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캄보디아 폭력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손님들이 해당 보도 이후 식당에 오지 않아, 영업 손실을 입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별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TV조선(및 인터넷 TV조선)과 KNN(및 iKNN)은 각각 손해배상 2,000,000원과 손해배상 2,000,000원 및 기사삭제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중재부는 MBN 및 인터넷 MBN에 대해서 해당 보도는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KBS-1TV의 동일한 보도에 대해 서울중재부에서는 심리 전 취하가 되었고, 경남중재부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KBS 뉴스7〉, 〈KBS 뉴스9〉,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2015년 4월 3일자, KBS 미디어 4월 3일자 다시보기면)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20여 명 중경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조정대상보도 2

- MBN - 뉴스 8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수십 명 패싸움... '정글도'까지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MBN 뉴스 다시보기면)

■ 내 용

- ▷ 앵커 : 도심의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인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흥기와 각목까지 등장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력 사고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외국인 식당. 계산대 근처에서 캄보디아인끼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식당 안은 수십 명이 엉겨붙었고, 의자와 술병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싸움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정글도를 잡고 상대를 위협합니다.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에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2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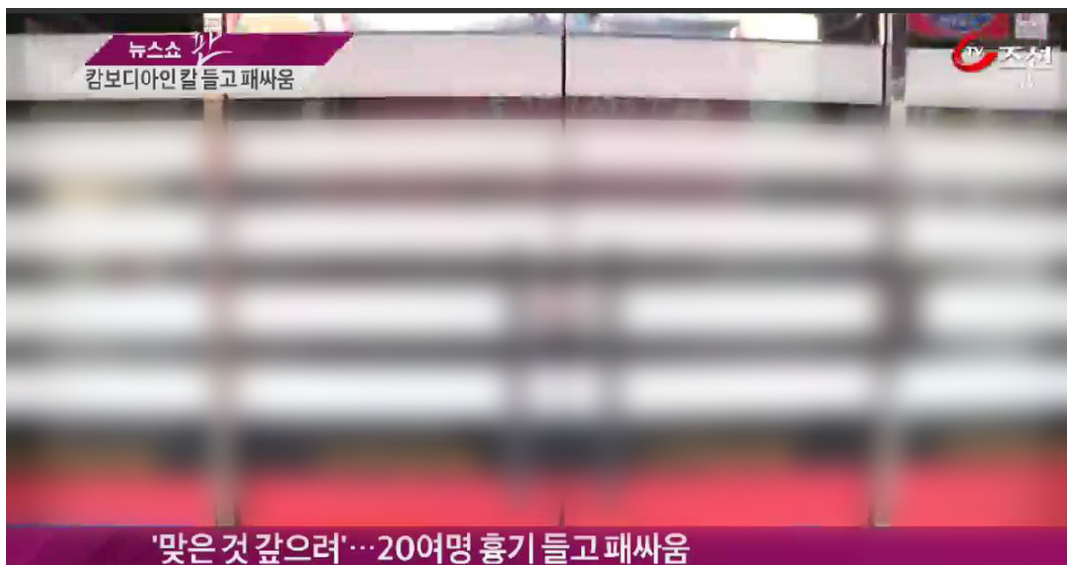


- ▶ 기자 : “주점 안에서 시작된 캄보디아인들끼리의 집단 패싸움은, 이곳 거리까지 나와서도 이어졌습니다.”
- ▶ 목격자 : “피를 흘리면서 전부 도망갔지. 피가 여기까지 흘렸어. 이게 전부 다 핏자국이야.”
- ▶ 기자 : 부산에 사는 캄보디아인이 김해에서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원정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아직 행동강령이 있다든지 조직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서...”
- ▶ MBN 뉴스 강○○입니다.

조정대상보도 3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칼 들고 패싸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1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대상보도4

- KNN - 뉴스아이 프로그램 『파리 트는 외국인 조폭세력, 경찰대응은 제자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iKNN 2월 12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2015서울조정2675, 2676, 2015부산조정28, 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서울조정2673, 2674)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17, 18)

취하 (2015서울조정2671, 2672 사유: 관할변경)

조정성립사항-TV조선, 인터넷 TV조선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2015년 5월 1일까지 신청인 식당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MBN·인터넷 MBN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4.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성립사항-KNN, iKNN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9일까지 총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28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경기조정145, 146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오피스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화면에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오피스텔 임대료가 되지 않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1차 심리 이후 문제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삭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OBS경인TV - 뉴스 M 프로그램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 경찰 5명 주의·경고』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2일자, 인터넷 OBS경인TV 10월 12일자 다시보기면)

내 용 - <전략>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경찰 5명 주의·경고

2015년 10월 12일 (월) 20:38:13

박성완 ✉ bowings@obs.co.kr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조정대상보도는 다음의 각 프로그램(인터넷 OBS-TV 동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보도로 한다.
 - 2015. 10. 1.자 ‘뉴스M 경기-인천/뉴스라인 인천-경기’
 - 2015. 10. 2.자 ‘뉴스 740’
 - 2015. 10. 12.자 ‘뉴스M 경기-인천’
2. 피신청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 2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례 29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이 친권자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4071 손해청구
신 청 인	오○○ 외 2인
피 신 청 인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일일드라마에서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을 얼굴 부분은 출연자들의 얼굴로 합성한 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방송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비록 세쌍둥이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은 합성되어 있지만 세쌍둥이 사진은 희소성이 있어 주변에서 신청인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세쌍둥이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사진에는 신청인들의 붉은 색 옷과 다리 및 발의 일부만이 노출되어 신청인들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신청인들임을 식별할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특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만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위대한 조강지처』 프로그램 (2015년 11월 2일자)

■ 내 용 -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오○○ 외 2인에게 각 5,000,000원씩 총 15,000,000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1월 1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01. 0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